「소비자기본법(제 1 장-제 2 장)」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78호
- **공 포 일**: 1968년 5월 30일
- **개 정 일**: 2012년 8월 22일

원문	번역문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の情報の質及び量並びに交渉力等の格差にかんがみ、消費者の利益の擁護及び増進に関し、消費者の権利の尊重及びその自立の支援その他の基本理念を定め、国、地方公共団体及び事業者の責務等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の施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消費者の利益の擁護及び増進に関する総合的な施策の推進を図り、もつて国民の消費生活の安定及び向上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의 질과 양, 교섭력 등의 차이에 비추어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에 관하여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 지원, 그 밖의 기본 이념을 정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基本理念） 消費者の利益の擁護及び増進に関する総合的な施策（以下「消費者政策」という。）の推進は、国民の消費生活における基本的な需要が満たされ、その健全な生活環境が確保される中で、消費者の安全が確保され、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消費者の自主的かつ合理的な選択の機会が確保され、消費者に対し必要な情報及び教育の機会が提供され、消費者の意見が消費者政策に反映され、並びに消費者に被害が生じた場合には適切かつ迅速に救済されることが消費者の権利であることを尊重するとともに、消費者が自らの利益の擁護及び増進のため自主的かつ合理的に行動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消費者の自立を支援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2조(기본이념) ① 소비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이하 “소비자정책”이라 한다)은 국민소비생활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어 건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 확보,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 확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의 기회 제공, 소비자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반영 및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가 소비자의 권리임을 존중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스스로의 이익 옹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자립 지원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消費者の自立の支援に当たつては、消費者の安全の確保等に関して事業者による適正な事業活動の確保が図られるとともに、消費者の年齢その他の特性に配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소비자의 자립을 지원할 때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하여 사업자에 의한 적정한 사업활동의 확보와 아울러 소비자의 연령, 그 밖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消費者政策の推進は、高度情報通信社会の進展に的確に対応することに配慮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소비자정책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4　消費者政策の推進は、消費生活における国際化の進展にかんがみ、国際的な連携を確保しつつ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消費者政策の推進は、環境の保全に配慮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소비자정책은 소비생활에서 국제화의 진전에 비추어 국제적인 연대를 확보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⑤ 소비자정책은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第三条（国の責務） 国は、経済社会の発展に即応して、前条の消費者の権利の尊重及びその自立の支援その他の基本理念にのつとり、消費者政策を推進する責務を有する。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대응하여 제2조의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 지원, 그 밖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
第四条（地方公共団体の責務） 地方公共団体は、第二条の消費者の権利の尊重及びその自立の支援その他の基本理念にのつとり、国の施策に準じて施策を講ずるとともに、当該地域の社会的、経済的状況に応じた消費者政策を推進する責務を有する。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제2조의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 지원, 그 밖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시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
第五条（事業者の責務等） 事業者は、第二条の消費者の権利の尊重及びその自立の支援その他の基本理念にかんがみ、その供給する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次に掲げる責務を有する。 一　消費者の安全及び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公正を確保すること。 二　消費者に対し必要な情報を明確かつ平易に提供すること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 지원, 그 밖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1. 소비자의 안전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것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제공할 것

。 三 消費者との取引に際して、消費者の知識、経験及び財産の状況等に配慮すること。 四 消費者との間に生じた苦情を適切かつ迅速に処理するために必要な体制の整備等に努め、当該苦情を適切に処理すること。 五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消費者政策に協力すること。 2 事業者は、その供給する商品及び役務に関し環境の保全に配慮するとともに、当該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品質等を向上させ、その事業活動に関し自らが遵守すべき基準を作成すること等により消費者の信頼を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소비자와의 거래 시에 소비자의 지식, 경험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것 4.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등에 노력하고 그 고충을 적절히 처리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정책에 협력할 것 ②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환경 보전을 고려하고 아울러 해당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품질 등을 향상시켜 그 사업 활동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작성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六条 事業者団体は、事業者の自主的な取組を尊重しつつ、事業者と消費者との間に生じた苦情の処理の体制の整備、事業者自らがその事業活動に関し遵守すべき基準の作成の支援その他の消費者の信頼を確保するための自主的な活動に努めるものとする。	제6조 사업자 단체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존중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고충처리 체제의 정비,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작성 지원, 그 밖의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자주적인 활동에 노력한다.
第七条 消費者は、自ら進んで、その消費生活に関して、必要な知識を	제7조 ①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

修得し、及び必要な情報を収集する等自主的かつ合理的に行動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消費者は、消費生活に関し、環境の保全及び知的財産権等の適正な保護に配慮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자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관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적정한 보호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八条 消費者団体は、消費生活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並びに意見の表明、消費者に対する啓発及び教育、消費者の被害の防止及び救済のための活動その他の消費者の消費生活の安定及び向上を図るための健全かつ自主的な活動に努めるものとする。	제8조 소비자 단체는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의견 표명, 소비자에 대한 계발 및 교육,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활동, 그 밖의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을 위한 건전하며 자주적인 활동에 노력한다.
第九条（消費者基本計画） 政府は、消費者政策の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消費者政策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以下「消費者基本計画」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消費者基本計画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一 長期的に講ずべき消費者政策の大綱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消費者政策の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に必要な事項	제9조(소비자기본계획) ① 정부는 소비자정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소비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1. 장기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소비자정책의 골자 2. 제1호의 사항 외에 소비자정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内閣総理大臣は、消費者基本計画の案につき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遅滞なく、消費者基本計画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消費者基本計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③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자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각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에 따른 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비자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소비자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十条（法制上の措置等） 国は、この法律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関係法令の制定又は改正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政府は、この法律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財政上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十条の二（年次報告） 政府は、毎年、国会に、政府が講じた消費者政策の実施の状況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조의2**(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강구한 소비자정책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二章　基本的施策	**제2장 기본적 시책**
第十一条（安全の確保） 国は、国民の消費生活における安全を確保するため、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の必要な基準の整備及び確保、安全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の事業者による回収の促進、安全を害するおそれ	**제11조**(안전의 확보) 국가는 국민의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품 및 용역에 대한 필요한 기준의 정비 및 확보,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사업자에 의한 회수의 촉진, 안전을 해할 우려가

がある商品及び役務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있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十二条（消費者契約の適正化等） 国は、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の適正な取引を確保するため、消費者との間の契約の締結に際しての事業者による情報提供及び勧誘の適正化、公正な契約条項の確保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12조**(소비자계약의 적정화 등)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적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권유의 적정화, 공정한 계약 조항의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十三条（計量の適正化） 国は、消費者が事業者との間の取引に際し計量につき不利益をこうむ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適正な計量の実施の確保を図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13조**(계량의 적정화)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 시에 계량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정한 계약의 실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十四条（規格の適正化） 国は、商品の品質の改善及び国民の消費生活の合理化に寄与するため、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適正な規格を整備し、その普及を図る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る規格の整備は、技術の進歩、消費生活の向上等に応じて行なうものとする。	**제14조**(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는 상품의 품질 개선 및 국민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정한 규격을 정비하고 보급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정비는 기술의 진보, 소비생활의 향상 등에 맞게 시행한다.

第十五条(広告その他の表示の適正化等) 国は、消費者が商品の購入若しくは使用又は役務の利用に際しその選択等を誤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品質等に関する広告その他の表示に関する制度を整備し、虚偽又は誇大な広告その他の表示を規制する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15조**(광고, 그 밖의 표시의 적정화 등) 국가는 소비자가 상품의 구입이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시에 선택 등을 잘못하지 아니하도록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품질 등에 관한 광고, 그 밖의 표시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허위 또는 과대 광고, 그 밖의 표시를 규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十六条(公正自由な競争の促進等) 国は、商品及び役務について消費者の自主的かつ合理的な選択の機会の拡大を図るため、公正かつ自由な競争を促進す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2 国は、国民の消費生活において重要度の高い商品及び役務の価格等であつてその形成につき決定、認可その他の国の措置が必要とされるものについては、これらの措置を講ずるに当たり、消費者に与える影響を十分に考慮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제16조**(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등) ① 국가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상품 및 용역의 가격 등으로서 그 형성에 대하여 결정, 인가, 그 밖의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조치를 강구할 때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第十七条(啓発活動及び教育の推進) 国は、消費者の自立を支援するため、消費生活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情報の提供等消費者に	**제17조**(계발활동 및 교육의 추진) ① 국가는 소비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対する啓発活動を推進するとともに、消費者が生涯にわたつて消費生活について学習する機会があまねく求められている状況にかんがみ、学校、地域、家庭、職域その他の様々な場を通じて消費生活に関する教育を充実する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2 地方公共団体は、前項の国の施策に準じて、当該地域の社会的、経済的状況に応じた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소비자에 대한 계발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생애에 걸쳐 소비생활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널리 요구되는 상황에 비추어 학교, 지역, 가정, 직장, 그 밖의 다양한 장소를 통하여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국가 시책에 준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十八条（意見の反映及び透明性の確保） 国は、適正な消費者政策の推進に資するため、消費生活に関する消費者等の意見を施策に反映し、当該施策の策定の過程の透明性を確保するための制度を整備する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18조**(의견의 반영 및 투명성의 확보) 국가는 적정한 소비자정책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에 관한 소비자 등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해당 시책의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十九条（苦情処理及び紛争解決の促進） 地方公共団体は、商品及び役務に関し事業者と消費者との間に生じた苦情が専門的知見に基づいて適切かつ迅速に処理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苦情の処理のあつせん等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都道府県は、市町村（特別区を含む	**제19조**(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의 촉진) ① 지방공공단체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고충을 전문적 식견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의 알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도부현은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과의 연대를 도

。）との連携を図りつつ、主として高度の専門性又は広域の見地への配慮を必要とする苦情の処理のあつせん等を行うものとするとともに、多様な苦情に柔軟かつ弾力的に対応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及び都道府県は、商品及び役務に関し事業者と消費者との間に生じた苦情が専門的知見に基づいて適切かつ迅速に処理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人材の確保及び資質の向上その他の必要な施策（都道府県にあつては、前項に規定するものを除く。）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国及び都道府県は、商品及び役務に関し事業者と消費者との間に生じた紛争が専門的知見に基づいて適切かつ迅速に解決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모하고 주로 고도의 전문성 또는 폭넓은 관점에의 고려가 필요한 고충처리의 알선 등과 아울러 다양한 고충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도도부현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고충을 전문적 식견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재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 그 밖의 필요한 시책(도도부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도도부현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二十条（高度情報通信社会の進展への的確な対応） 国は、消費者の年齢その他の特性に配慮しつつ、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の適正な取引の確保、消費者に対する啓発活動及び教育の推進、苦情処理及び紛争解決の促進等に当たつて高度情報通信社会の進展に的確に対応す	**제20조**(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의 정확한 대응) 국가는 소비자의 연령, 그 밖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적정한 거래의 확보, 소비자에 대한 계발활동 및 교육의 추진,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의 촉진 등을 할 때에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정확히 대응

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二十一条（国際的な連携の確保） 国は、消費生活における国際化の進展に的確に対応するため、国民の消費生活における安全及び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の適正な取引の確保、苦情処理及び紛争解決の促進等に当たつて国際的な連携を確保する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21조**(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국가는 소비생활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소비생활의 안전 및 소비자와 사업자의 적정한 거래의 확보,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의 촉진 등을 할 때에 국제적인 연대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二十二条（環境の保全への配慮） 国は、商品又は役務の品質等に関する広告その他の表示の適正化等、消費者に対する啓発活動及び教育の推進等に当たつて環境の保全に配慮す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22조**(환경의 보전에 대한 배려) 국가는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등에 관한 광고, 그 밖의 표시의 적정화 등, 소비자에 대한 계발활동 및 교육의 추진 등을 할 때에 환경의 보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第二十三条（試験、検査等の施設の整備等） 国は、消費者政策の実効を確保するため、商品の試験、検査等を行う施設を整備し、役務についての調査研究等を行う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試験、検査、調査研究等の結果を公表する等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23조**(시험, 검사 등의 시설의 정비 등) 국가는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품의 시험, 검사 등을 하는 시설을 정비하고 용역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검사,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